大田直轄市社會教育施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 審查報告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 目 次

1.	審 査 經 過	2
2.	提案說明要旨 · · · · · · · · · · · · · · · · · · ·	2
3.	專門委員 檢討 要旨 · · · · · · · · · · · · · · · · · ·	3
4.	質疑 및 答辯 要旨 · · · · · · · · · · · · · · · · · ·	4
5.	討論要旨	4
6	審	4

# 大田直轄市社會教育施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 審査報告

1991年 12月 27日 內務委員會

# 1.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1991年 12月 19日

다. 上 程 日 字: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財務局長)

### 가. 提案理由

- 國民에게 平生을 通한 社會教育의 機會를 賦與하기 위하여 社 會教育을 주된 目的事業으로하여 社會教育法에 의하여 登錄된 非營利 社會教育 施設과
- 勞動敎育院, 運輸研修院, 博物館 등으로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築物에 대하여 取得稅,登錄稅,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 등을 課稅免除 하였으나

○ 課稅免除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條例의 不合理한 用語를 整備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하고자 함.

#### 나 主要骨子

- ㅇ 不合理한 用語의 整備 (第 2條)
  - '91. 11. 30. 법률 第 4410號로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이 制定公布되고 博物館法이 廢止되어 博物館法을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 法으로 調整
- ㅇ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져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고져 함.

#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安鍾贊)

- 本 改正條例案은 모든 國民에게 社會教育의 機會를 附與하기 위하여 社會教育을 주된 目的事業으로하여 社會教育法에 의하여 登錄된 非營利 社會教育施設에 對한 課稅免除 條例가 '91年末로 時限 滿了되고 博物館法의 廢止에 따라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 不合理한 用語를 整備하여 地方稅法 第 9條의 規定에 의거 1991 . 11. 21.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事案으로서
- 첫째: '91. 11. 30. 法律 第 4410號로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이 制定 公布되고 博物館法의 廢止에 따라 免除 對象의 用語를 整備하려 는 것이며 (第 2條)

둘째:條例의 適用時限을 1994年 12月 31 日까지 延長하려는 事案임. (附則 第 ②項)

以上은 社會教育法 第 9條 및 第 21條의 規定에 依해 設立·登錄된 管內 社會教育施設에 대하여 地方稅法 第 7條 第 1項에 根據하여 社會教育施設用으로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및 建築物에 對한 課稅 免除 效力時限을 延長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地域 住民의 平生教育에 寄與할 것으로 期待되는바 妥當한 措置라 思料됨.

- 4. 質疑 및 答辯要旨:省 略
- 5. 討論要旨:省略
- 6. 審 査 結 果: 原案 可決

## 大田直轄市 社會教育 施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 1. 提 案 理 由

- 가. 國民에게 平生을 通한 社會教育의 機會를 賦與하기 위하여 社會教育을 주된 目的事業으로하여 社會教育法에 의하여 登錄된 非營利 社會教育 施設과
- 나. 勞動敎育院, 運輸硏修院, 博物館 등으로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建築物에 대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消防共同施設稅 등을 課稅免除 하였으나
- 다. 課稅免除 其間이 '91年末로 滿了됨에 따라 同條例의 不合理한 用語 를 整備하여 一定期間 課稅免除하고자 함.

#### 2. 主 要 骨 予

- ㅇ 不合理한 用語의 整備 (第2條)
  - '91. 11. 30. 법률 第 4410號로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이 制定公布되고 博物館法이 廢止되어 博物館法을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으로 調整
- 適用時限을 延長하고져 함 (附則 第 ②項)
  - 從前에는 適用時限을 19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1994年 12 月 31日까지로 延長하고자 함.

#### 3. 參考事項

#### 0 社會教育法

- 第 9條 (營利의 制限) 社會教育은 營利를 目的으로 實施되어서는 아니된다.
- 第 21條(社會教育施設의 設置)① 社會教育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 ② 第 1項에 의한 社會教育施設의 設置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市·道教育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 ③ 社會教育施設의 設置者가 그 施設을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市・道教育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 0 地方稅法

- 第7條(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等을 위한 條例) 第 7條 및 第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정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91. 11 21. (內務部長官)
- 0 立法豫告

○ 期間: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法:揭示公告 및 市公報掲載 ('91.11.28 第 74 號)

○ 結果: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부칙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 일까지 적용한다.

#### 부 칙

-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종전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원 행	개 정 안
제 2조 (면제대상) ① 1~4 (생략)	제2조(면제대상)① 1~4 (현행과갈음
5.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 및 준박물관 시설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u> 기설</u>
부 칙(조례제1560호)	부 칙(조례 제1560호)
② (시행기간) 이 조레는 따로	② (적용시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다.	